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5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한정애·추미애·이병진

박희승 · 홍기원 · 김기표

주철현 • 조인철 • 김동아

정일영 · 문진석 · 이학영

송옥주·강준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가능한 용수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, 지하수 인공함양 등 대체·보조 수자원의 개발·허용을 하고 있다. 그런데 개발된 대체·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로의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기후위기에 적응하기위해 대체·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·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는 대체·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·보조 수자원의 개발·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

제4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2(대체·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도로의 활용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대체·보조 수자원을 공업용수도로의 활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.

② 국가는 공업용수도와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대체·보조 수자원 시설과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8조의2(대체·보조 수자원의
	공업용수도로의 활용) ① 국가
	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
	<u>「수자원의 조사・계획 및 관</u>
	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
	른 대체・보조 수자원을 공업
	용수도로의 활용에 대하여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
	<u>있다.</u>
	② 국가는 공업용수도와 「수
	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
	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대
	체・보조 수자원 시설과의 연
	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
	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
	<u>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